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5. 12. 12
-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5. 12. 19
- 라. 상정일자 : 1995. 12. 20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중동신도시내 신규주택 건설과 아파트 추가임주로 인한 통반 신규설치가 필요하며
- 일반지역내 과대 통반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분통·분반이 요구되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통·반 행정구역 조정

구 별	현 행		개 정		비 고 (증 가)
	통	반	통	반	
계	972	6,062	1,044	6,464	
원 미 구	500	3,056	534	3,238	통 : 42
소 사 구	234	1,747	252	1,852	반 : 402
오 정 구	238	1,289	258	1,374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
의결 년월일	95. 12. 20 (제4차)

제출년월일 : 1995. 12. 12

발 의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중동신도시내 신규주택건설과 아파트 추가입주로 인한 통반 신규설치가 필요하며
- 일반지역내 과대 통반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분통·분반이 요구되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반 행정구역 조정

구 별	현 행		개 정		비 고
	통	반	통	반	
계	972	6,062	1,044	6,464	
원 미 구	500	3,056	534	3,238	통 : 72 반 : 402
소 사 구	234	1,717	252	1,852	
오 정 구	238	1,289	258	1,37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5조별표2 구명·동명·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심곡1동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심곡2동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역곡1동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역곡2동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도당동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약대동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중1동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중3동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상1동 8통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상1동 30통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상1동 31통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심곡본1동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심곡본동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소사본1동 “별지 15”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소사본2동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소사본2동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소사본3동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괴안동을 “별지 18”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송내1동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송내2동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성곡동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원중1동을 “별지 22”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고강본동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고강1동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오정동을 “별지 25”과 같이 한다.
- 동조별표2 구명·동명·통·반 및 관할구역(번지)중 신흥동을 “별지 26”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구 관할 동별 통·반 현황

구분		동 별	통 수	반 수	비 고
구별	개				
	34		1,044	6,464	
소계	17		534	3,238	
원 미 구	심곡1동		20	114	
	심곡2동		23	139	
	심곡3동		18	110	
	원미1동		23	145	
	원미2동		26	154	
	소사동		14	99	
	역곡1동		24	171	
	역곡2동		29	193	
	춘의동		36	182	
	도당동		42	231	
	약대동		36	197	
	중 동		29	208	
	중 1동		47	252	
	중 2동		29	212	
	중 3동		71	415	
	상 동		31	171	
	상 1동		36	245	
소 계	10		252	1,852	
소 사 구	심곡본1동		25	139	
	심곡본동		21	167	
	소사본1동		18	127	
	소사본2동		14	102	
	소사본3동		33	258	
	범박동		15	104	
	괴안동		34	293	
	역곡3동		38	257	
	송내1동		29	210	
	송내2동		25	195	
소 계	7		258	1,374	
오 정 구	성곡동		50	254	
	원종 1동		36	197	
	원종 2동		30	182	
	고강본동		42	223	
	고강 1동		27	150	
	오정동		33	165	
	신흥동		40	203	